##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3

발의연월일: 2020. 6. 8.

발 의 자:신동근・이정문・윤호중

최혜영 · 정필모 · 고용진

유정주 · 김철민 · 김윤덕

이상헌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진작하고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, 공연 관람 및 박물관·미술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· 공연비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(이하 "문화비 소득공제"라 함)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.

이를 위해 도서·공연티켓 판매업자 및 박물관·미술관 등 소득공제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자를 접수·등록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·관리하는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「문화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나,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 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1조 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도서·공연비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위탁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제2항제 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문화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41조의2(도서·공연비, 박물관·
	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
	사무의 위탁) 문화체육관광부
	<u>장관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</u>
	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
	해당하는 소득공제 관련 사무
	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「문화기본
	법」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
	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